

---

# 中國의 租稅制度 改革 및 稅收政策

---

1995. 7

韓國租稅研究院

# 목 차

## 제 1 주제 中國의 租稅制度 改革

1. 중국 세수체제 개혁의 필요성
2.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기본원칙
3.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4. 중국 세수체제개혁의 기본평가와 전망

## 제 2 주제 中國對外開放經濟下의 稅收政策

1. 중국의 대외경제관련 세수제도의 건설
2. 국제세수협정의 체결과 집행에 있어서의 발전
3. 탈세방지 업무의 추진
4. 대외경제관련 세수징수관리 강화와 경제발전의 촉진

# 中國의 租稅制度 改革

李 春 孝

長春稅務學院 副院長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은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중국은 기존의 세수체제에 대하여 상응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세제개혁은 중국의 건국 이래 가장 큰 범위에서 그리고 가장 심도있게 시행된 중요한 개혁이다.

저자는 4가지 문제를 제기 및 설명코자 하는바 첫째 중국세수체제개혁의 필요성, 둘째 중국세수체제개혁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셋째 중국세수체제개혁의 주요 내용, 넷째 중국세수체제개혁의 기본평가 및 전망이 그것이다.

# 1. 중국세수체제개혁의 필요성

## (1)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수립에 있어서의 필요성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반드시 시장경제의 객관적인 수요와 특징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수제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는 통일된 세법, 공평한 세수부담, 세제의 간소화, 합리적인 분권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중국의 기존의 세제에는 실제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현행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 (2) 거시조정 강화의 필요성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세수는 국가가 상품의 분배, 재정수입의 조직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 재생산의 조절에 있어 국가의 중요한 도구로서 그 지위와 작용은 여타 행정수단과 경제수단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던 국가의 통제수단 즉 행정명령, 지시성 계획 등은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자원배치가 주로 시

장메카니즘을 통해서 진행되며 가격조절기능 또한 국가가 직접 가격을 관리하는 형태에서 가격규칙과 시장의 수급관계에 따라 조절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운영과정에서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 즉 경제총량의 균형, 산업구조의 조정, 공평한 경쟁의 보장, 사회분배의 불균형의 해결 등 문제는 완전히 시장메카니즘의 작용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만은 없으며 반드시 국가의 거시조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새롭고 건전한 세제를 수립함으로써 신구체제의 교체과정에서 거시조정에 속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시장메카니즘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 (3) 경제체제개혁 심화의 필요성

세제개혁은 현재 전체 경제체제개혁중의 중요한 문제로서 分稅制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체제개혁과 금융체제, 대외무역체제, 투자체제,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 등은 세제개혁과는 상호 촉진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세제개혁은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4) 분배관계 합리화의 필요성

경제활동에서는 분배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곳이 많은데 그중에는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 중앙과 지방의 분배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비합리이며 또한 규범화 되지도 않은 곳이 많아 이러한 분배메카니즘은 반드시 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파생하게 된다. 현재의 이러한 불건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발전과 각 방면에서의 적극성의 확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수는 본질적으로 분배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제의 확립을 통하여 각종 분배관계를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 (5) 국제경제와 조화의 필요성

시장경제는 개방적인 경제이며 중국의 경제는 국제경제의 유기적인 구성원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관리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세수정책 또한 규범화되고 국제관계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와 향후의 경제 발전에 매우 절박한 것이다. 개혁초기에 우리는 현행의 세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일련의 세수조례는 당시의 역사적

인 조건의 산물로서 오늘에 와서 보면 일부는 계속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하여야 하며 또 일부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대체토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절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평한 세수부담의 원칙과 운용상의 편이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내용과 대외용의 두가지 세제가 병존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2. 세계개혁의 지도이념과 기본원칙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당 11기 3중전회 이후의 세계개혁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세계의 연혁과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한 세계개혁의 총체적인 지도이념은 통일된 세법, 공평한 세수부담, 간소화된 세제, 합리적인 분권, 분배관계의 합리화, 분배방식의 규범화 재정수입의 보장,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청에 부합하는 세계의 수립에 두어져야 한다.

상술한 지도이념에 근거한 세계개혁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세계개혁은 중앙정부의 거시조정능력의 강화에 유리하여야 한다.

세제구조의 조정, 세목의 합리적인 구획과 세율의 확정, 분세제의 시행, 중앙과 지방간 분배관계의 합리화,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 중앙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평한 세수부담을 실현하고 평등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평한 세수부담은 시장경제의 세수제도에 대한 기본적 요구이다. 각종 소유제와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세율 및 세목의 문제를 점차 정리해 나가야 한다. 통일된 기업소득세와 완비된 유통세를 통하여 각 기업간에 세수부담이 공평하도록 하여 기업이 시장에서의 평등경쟁 실현을 위한 조건을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의 산업정책을 구현하고 경제구조의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세목의 결정, 세율의 확정 및 세수정책의 제정은 국가의 산업발전 순서에 따라 경제구조의 조정과 함께 시행되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통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수준의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4) 세제의 간소화, 규범화를 실현해야 한다. 상황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세목은 폐지하고 중복된 세종은 정리하며 필수적인 세목은 개선하여 세제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세수가 분배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국제관례를 참조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



여 세제의 완비를 확보함으로써 세법의 통일성과 존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여야 한다. 통일된 세법, 합리적인 분권의 기초위에 점차 지방세의 수입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지방세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지방에 상응하는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분세제”를 위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세제개혁의 목표는 중국에 중국적 특색을 갖추고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세제를 수립하는데 있다.

### 3.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세제개혁의 주요내용은 유통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기타 세종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 (1) 유통세제

유통세제는 전체 세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통세 개혁의 목표는 공평성, 중립성, 투명성,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치세, 소

비세, 영업세 등의 3가지 세제로 이루어지는 유통세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통세는 내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징수하던 공상통일세는 폐지되었다. 상품교역과 수입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증치세를 징수하고 소수의 소비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징수하며 증치세를 시행하지 않는 노무(용역)교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징수한다.

### 1) 증치세

규범화된 증치세를 보급한다. 증치세는 생산, 도매, 소매와 수입상품 및 가공, 수리, 조립에 대하여 징수한다.

증치세는 가격외계산 방법을 채택하는바 증치세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계산 근거로 삼는다. 소매이전의 각 단계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증치세 세금과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명기한다.

증치세는 기본세율과 저세율의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세율은 17%, 저세율은 13%이다. 세수조례규정에서 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기타 납세상품과 노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상품에 대

해서는 零세율을 적용하는바 상품의 수출통관후에 세금을 전부 반환토록 한다.

영수증에 명기한 세급에 근거하여 세액의 공제를 실시한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생산성 증치세이며 따라서 외국에서 구입한 자본성 고정자산증에 포함된 세액은 납세액의 계산시에는 공제할 수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농산물 원료는 10%의 공제율로 계산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년간 매출수입이 규정액보다 작거나 회계가 건전하지 못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편한 징세방법을 사용하여 매출수입 금액과 징수율에 따라 납세액을 결정하는 간편한 방법을 시행한다.

개혁후 규범화된 방법에 따라 납세를 계산하는 증치세 납세자는 전문적인 세무등기를 실시하고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사용하여 엄격한 관리에 편리토록 하여야 한다.

## 2)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소비품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증치세의 전면적인 시행이후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주로 상품세 세율이 높은 상품 즉 담배, 술, 화장품, 피부 및 모발 보호

용품, 고급장식, 폭죽, 휘발유, 디젤유, 타이어, 오토바이, 승용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세는 從量定額과 從價定率의 두가지 징수방법을 시행한다.

### 3) 영업세

영업세는 주로 상품유통 이외의 3차 산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전통신업, 금융보험업, 문화오락업 및 서비스업 등이 그 대상이다.

영업세는 9개의 징세항목과 3가지의 세율로 구성된다.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전통신업, 문화오락업의 세율은 3%,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양도, 부동산매각세율은 5%, 오락업은 5%~20%의 세율을 적용하며 각지에서 규정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 (2)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의 개혁목적은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를 조정 및 규범화 하고 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을 촉진하며 공평한 경쟁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기업소득세의 개혁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바 1단계는 내자기

업소득세의 통일화이고 2단계는 적당한 시기에 내자·외자기업소득세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번 기업소득세의 개혁은 주로 내자기업에게 적용되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는 변화되지 않았다.

1994년 1월 1일부터 국영기업소득세법, 집체기업소득세법, 사영기업소득세법을 폐지하였고 통일된 내자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였다.

내자기업소득세는 33%의 비례세율을 시행한다.

세법에 규범화된 기업소득세 납세전의 항목과 표준에 따라 납세액의 확정은 기업재무제도의 관습에 따르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세원을 안정화시키도록 한다.

국영기업조절세와 국유기업이 상납하는 국가 에너지 및 교통 중점건설기금과 예산조절기금은 취소하였다.

국유기업이 소득세의 납세전에 대출 상환을 허용하던 우대정책을 취소하고 새로운 규범화된 기업대출상환제도를 수립하였다.

통일된 내자기업소득세제의 시행후 국유기업은 이윤상납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3) 개인소득세

현단계에서 중국의 국민수입에 대한 정책은 평균주의를 배제하고 노

동량에 따른 수입결정을 장려하며 수입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늘려나가며 과다수입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분배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있어 시장메카니즘 자체는 개인의 수입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제관례에 따라 세수가 개인수입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소득세를 개혁하여 중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개혁이전 중국의 개인소득에 대한 징세제도는 3개의 법률과 법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규범화되지 못한 것일뿐 아니라 비용공제가 매우 낮고 명목세율도 지나치게 높은 문제점 등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제의 개혁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규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범위는 세법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가진 중국 국민과 중국국내에서 수입을 취득한 외국인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항목별 공제, 항목별 세율확정, 항목별 징수 원칙을 시행한다. 임금, 급여소득은 5%에서 45%에 이르는 9등급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개체공상호(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은 5%에서 35%에 이르는 5등급의 초과누진세율을 적

용하여 기업소득세의 세수부담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노무(용역)보수는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목은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기초 생활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비용공제액은 통일적으로 800원(RMB)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외국적 인사에 대해서는 신규세법은 부가적인 비용공제 규정을 추가하여 외국적 인사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

#### (4) 기타 세목

##### 1) 자원세

개혁후 자원세의 징세범위는 모든 광산자원을 포함하여 자세한 징세 품목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원광, 흑색금속원광, 유색금속원광, 소금 등이 있다. 동시에 증치세의 개혁에 따라 세수부담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자원세는 상품별로 從量定額의 징세방법을 실시하여 상하한의 세액폭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종류의 자원의 채굴조건이 다른 경우 세액도 상이하다.

## 2) 토지증치세

부동산 산업의 과다이윤에 대한 조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증치세는 부동산의 교역에 대하여 징수하되 교역과정의 가치증가 부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부동산 증치세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수입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삭감한 후의 나머지역이 된다. 공제항목은 토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지불한 가격, 토지개발에 대한 원가와 비용, 신규건물 및 우대시설의 원가와 비용, 매각세금 등을 포함한다.

토지증치세는 4단계의 누진세율을 시행하되 부동산 증치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그리고 50%에서 두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그리고 두배에서 세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그리고 세배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기타조세

증권교역세를 징수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징수한다.



도시유지건설세를 개혁하되 계산근거는 기업의 영업소득으로 하고 세율은 장차 조정을 가할 것이다.

기타 일련의 세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가하여 정리토록 할 예정이며 세율(세액) 또한 적절한 조정을 가하여 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 4. 중국 세수체제개혁의 기본평가와 전망

### (1) 신규세제의 기본평가

신규세제는 공평한 세수부담, 평등경쟁의 원칙을 실현하여 생존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시장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부합하게 되었다.

1) 신규세제는 중국의 세수체제와 국제세수체제간의 상호연결이라는 객관적인 필요성에 따라 중국과 국제세제의 조화를 가속화하였다. 실시결과에 따르면 증치세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세목으로서 중복징세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독특한 세수공제제도를 통하여 세액의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에 기여하였다.

2) 신규세제는 중앙재정수입의 비중을 제고하여 중앙에 재력을 집중시켜 국가경제의 안정발전과 거시조절작용의 발휘에 공헌하여 본 궤도에 올려 놓는데 기여하였다.

3) 신규세제는 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에 기여하여 국가와 기업간의 분배관계를 진일보하게 합리화시켰다.

## (2) 신규세제의 문제점 및 전망

현재와 향후의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중국의 세수업무의 주요임무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세수제도와 세수정책을 개혁하고 완비해 나가는 것이며 세수활동과 시장경제 운영을 상호 적응시켜 세수메카니즘과 시장메카니즘 사이에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1994년에 시행된 세제개혁은 비록 최대 한도에서 기존세제 중에서 시장경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개혁을 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진일보한 연구와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유통세를 보면 증치세 개혁은 아직도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르면 증치세는 상품과 노무의 두가지에 대하여 모두 징수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의 증치세 개혁은 상기의 상황의 실현을 목표로 함으로써 증치세의 진일보한 완비를 기하여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증치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를 보면 첫째 기업의 연속관계라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납세등급에 대한 분할관리는 비율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분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이러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경영메카니즘의 전환속도를 가속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 경쟁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여 손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내·외 양종의 소득세제가 병존하고 있는 문제이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핵심은 공평한 경쟁을 촉진시켜 건전하고도 완벽한 세법을 통하여 내·외자 기업소득세제를 통일하고 이를 통하여 공평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외자기업 세법·세제를 통일하여 공평경쟁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3) 지방세의 관리권한을 보면 중국의 현단계의 分稅制는 지방세의 입법, 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규범화 된 그리고 적절한 원칙이 있어야 하겠다.

세수업무는 그 작용을 더욱 발휘토록 하고 부단히 조정, 완비하여 경제발전의 촉진이라는 목표에 도달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의 조건하에서의 세수체제는 반드시 개혁, 완비되어 경제발전을 위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 中國對外開放經濟下的 稅收政策

張大龍

長春稅務學院 稅務系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외자이용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1991년 6월말까지 중국의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비준 누계는 34,080건으로서 그중 이미 17,546건이 개업을 하였으며 외국기업의 투자합의액은 478.8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외자는 상당부분이 중국의 투자장려정책과 중점과 산업정책수요에 부합하여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우리는 외자를 흡수하고 선진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업종의 생산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개방사업의 진일보한 발전과 전체경제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대외경제관련 세수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 1. 중국의 대외경제관련 세수제도의 건설

중국의 대외경제관련 세수제도는 대외개방이라는 경제변화속에서 점차 발전된 것이다. 그 대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시행한 이후 대외경제관련 제도건설은 부단히 발전·완비되어 왔으며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80년대초(1981-1982)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각각 공포되고 실시되었다. 이 3종의 세법은 실천과정에서 이러한 세수법규가 규정한 징세원칙과 납부제도는 정확한 것이며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외국기업의 반응 또한 양호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수요에 적응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설비의 도입을 촉진시켜 경제의 개방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유통세계 또한 1958년에 입법된 “공상통일세”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 이와같이 중국적 특색을 갖춘 대외경제관련 세제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1990년 이후 중국이 도입하는 외자와 기술의 규모·채널·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이미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개방도시와 개방지역 면에서 연해지역에서 내지로 개방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각기

다른 투자합작방식에 따라 별도로 입법징수하는 방식이 계속 시행되어 왔는바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더욱 확보하고 국제간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제관례에 진일보 접근하여 중국의 세수관할권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중국은 1991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고 1991년 4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하여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세법을 기존의 두가지 세법과 비교하여 보면 확연한 특징을 갖고 있는바 세율의 통일화, 세수우대정책의 통일화, 세수관할권 원칙의 통일화, 탈세방지 조항의 신설이 그것이다.

1994년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유통세제를 개혁하였는바 기존의 공상통일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로 개혁한 것이다. 그 결과 대내외 유통세제가 통일되었으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징수한 이후 세수부담이 증가한 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공상통일세의 세수부담 수준에 맞추어 징수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유통세 세수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와함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도 통일되었다.

1993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

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동 법의 공포시행후 개인소득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중국국민, 외국적 인사 및 개체공상호(개인상공업자)에 대하여 통일된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여 동법이 비교적 국제관례에 부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대외경제관련 세제와 국내세제는 점차 통일화되고 있으며 규범화, 합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2. 국제세수협정의 체결과 집행에 있어서의 발전

중국은 1981년부터 1994년 8월까지 세계의 40개 국가와 쌍무세수협정을 체결하였다. 외국과 체결한 2중과세방지협정은 중국이 대외개방과 투자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행한 중요한 노력중의 일부분이다. 외국과의 협정체결의 증가로 협정의 집행임무 또한 나날이 증가하게 되어 각 지방마다 대외경제관련 세무간부의 훈련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 협정의 집행과정에서 일련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1) 기업생산경영상의 수출입 권한과 이윤으로의 전환을 통제한 데 따른 외국기업의 손실 (2) 수출형 외화획득기업과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적은데 반해 대다수의 3자기업이 노동집약형이거나 저수준의 프로젝트



가 중복적으로 건설된 데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효율성 하락과 자금투입의 불합리성 (3) 국가의 세수우대정책의 편의적인 시행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국면을 전환시킨바 있다.

### 3. 탈세방지 업무의 추진

탈세방지업무는 대외경제관련 세수의 징수관리 업무의 중점이며 국제세수영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로서 중국은 탈세방지에 있어 점차 체계적인 탈세방지 정책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91년의 통일된 소득세법에서는 관련회사 사이의 업무왕래상의 이전가격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독립된 기업사이의 업무왕래에 따라 가격, 비용등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과세소득액을 낮추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토록 하였다. 이는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중국의 실제상황에 알맞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권익수호와 공평한 세수부담 및 평등경쟁원칙에 유리한 것이며 탈세방지업무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한 것이기도 하다.

심천시 세무국의 탈세방지업무는 일정한 수준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 경험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어가고 있다. 그 방법은 (1)

외국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판정은 우선 기업이 모든 외국의 교역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상황을 제시하고 전담반이 상세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을 내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2) 독립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판정은 기업의 증거제시와 세무기관의 반증이 서로 합치되는 방법을 통하여 판정을 하며 (3) 기업이 독립적인 거래가격과 재매출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써 가격을 추정하되 원가이윤율 수준은 최저 5% 이상의 선을 기준으로 한다. 심천시의 방법은 중국의 탈세방지업무의 발전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 **4. 대외경제관련 세수징수관리 강화와 경제발전의 촉진**

현재의 대외경제관련 세수업무의 주요한 목표는 대외개방경제에서의 지위와 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몇년동안 대외경제와 관련한 세수의 정책법규를 점차 완비하여 대외경제관련 세수의 징수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1) 내외자기업소득세의 통합문제**

중국이 다음번 5개년 계획 기간중에 기업소득세를 통일시켜 나간다는 것은 커다란 추세로 되었다. 이는 공평한 세수부담, 평등경쟁의 원칙에 유리하며 국제적인 세수관리에도 부합한다. 특히 WTO 가입후의 세수정책과 제도건설의 통일은 필연적인 추세이며 시장경제하에서의 통일된 거대시장의 형성에도 유익한 것이다. 내외자기업소득세제의 기본규정은 이미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의 처리는 좀더 연구해 나가야 한다.

## (2) 대외경제관련 세수의 징수관리강화와 이전가격세제의 수립

중국적 특색을 지닌 대외경제관련 세수징수관리체계의 수립은 대외개방과 발전에 적응하고 대외경제관련세수업무가 당면한 상황·임무 및 자신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된 타당한 과제인 것이다. 목적은 대외경제관련 세수법규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법에 따른 납세원칙을 추진하여 징수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개방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세수징수관리의 운영메카니즘을 수립하는데 있다. 국제관례를 참고로 하여 중국의 탈세방지의 정책조치를 완비해 나가며 체계적인 이전가격세제를 수립해 나갈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부지역에서 이미 실시중인 탈세방지정책조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경제 왕래에 적합한 탈세방지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납세 문제에 있어 탈세와 탈세방지의 논쟁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또한 은폐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탈세방지조치에 있어 커다란 발전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탈세방지의식의 강화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이윤으로의 전환과정에서의 탈세를 저지하는데 업무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 **(3) 대외경제관련 세수법제의 준수와 법에 따른 납세원칙의 견지**

90년대 이후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각종 명목의 “개발구”가 시행되고 경쟁적인 세수우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의 자의적인 확대, 우대방법의 자체제정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의 대외개방전략에 심각한 혼선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세법의 통일성과 존엄성에도 장애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향후에는 첫째 정돈, 둘째 시정의 원칙하에 대외경제관련 세수정책의 법체계 수립을 법에 따른 납세원칙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 **(4) 대외경제관련 세수우대조치의 조정**

현재의 전면적이고도 지역적인 세수우대를 산업정책세수우대를 중점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세수우대가 진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세수의 외자도입과정에서의 작용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세수우대사업과 세수우대조치를 조정하여 국제적인 세수관리의 기초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세수의 특정한 우대는 업종과 사업의 관점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근거하여 기초시설, 자원개발, 신흥산업, 첨단산업 및 외화획득형 업종에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의 관점에서는 우대의 중점을 조건이 비교적 좋은 특구에 두어 대내적으로 지역별로 우대조치와 방법을 다시 제정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투자기한의 관점에서는 장기투자에 우대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업종면에서는 에너지·교통 개발과 선진기술상품, 수입대체산업, 외화획득형 수출산업 및 첨단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